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61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박희승·위성곤·강유정

김한규 • 서영교 • 박상혁

김남희 • 윤준병 • 조계원

안호영 · 소병훈 · 최기상

전진숙 • 신영대 • 이재정

정성호 • 한민수 • 김영진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전달책·인출책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이 대부분이고 기존에는 주로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여 왔음.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추 가 및 법정형 상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합의부 관 할 사건이 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하였음. 예컨대 2024. 7. 이후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사건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 18%에 이르고 있고, 일부법원의 경우 전체 형사 합의부 사건 중 30%를 상회하기도 함. 이는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합의부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단 독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			
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			
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3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			
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u><신 설></u>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u>해당하는 사건</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